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4-35조의2제8항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제4-35조의2제9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계약자 등이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6-23조제3항, 제7-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5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 ① 영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

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2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설정·운영에 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에 따른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은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2-5조(서류의 보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p>
<p>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대상) ① (생 략)</p> <p><u><신 설></u></p>	<p>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제한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u></p>

② (생략)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생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 가. ~ 아. (생략)

<신설>

자. (생략)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차. (현행 자목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⑩·⑪ (생략)

<신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1. ~ 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 등이 제9-1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⑩·⑪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2.·3. (생략)

④ ~ ⑦ (생략)

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④·⑤ (생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상금융거래의 신용위험 노출 금액 및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항목 중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2.·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호 및 제6호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 (생략)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 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 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생략)

⑥·⑦ (생략)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신설>

-----제5호 및 제6호

-.

⑤ (현행과 같음)

1

-----제5호 및 제6호

-----.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기관의 지정)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

<신 설>

<신 설>

<신 설>

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15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 ① 영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

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지 1]

<별표 22>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제9-1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라.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의 처리

마. 업무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영업점(지점 포함) 자체점검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바.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2.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행위 방지 등 손해사정 수입 및 손해사정 업무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 정보 보호·과기 등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4. 손해사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자문 실시 대상 및 자문의 선정 기준

나. 의료자문 실시 동의서 징구 및 설명의무 이행 방법·절차

다. 의료자문 실시 현황 관리

라. 보험회사로부터 의료자문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업무 관련 내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운영기준 등 준수 의무

5.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관리 체계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보험계약자 등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제절차

나. 보험계약자 등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관리 체계

다. 민원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내역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등 민원 처리 안내 체계

6.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교육 담당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

나. 교육 실시 방법, 내용 및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절차

7. 지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지점의 영업 및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